

##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

## ● 사업목적

## 육아휴직 등 부여

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
## 대체인력 지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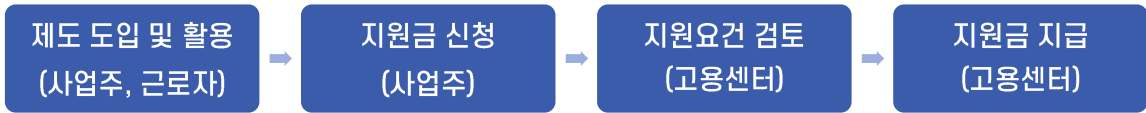
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**대체인력 활용을 지원**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
## ● 사업내용

구분	지원 대상 및 요건	지원 내용
육아휴직 등 부여	·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	①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1년 한도) ※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,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(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)  * 해당 사업장의 세 번째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
대체인력 지원금	·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(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)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,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	· 지원기간: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(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) 사용기간(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)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· 지원금액: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

## ● 사업추진체계(지원절차)

---



## ● 지원문의

---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23 ~ 7  
051-860-1931  
051-860-2072  
051-860-2100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10 ~ 5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71 ~ 5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<http://www.ei.go.kr>